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4. . . (제 회)	

자 연 재 난 구 호 및 복 구 비 용
부 담 기 준 등 에 관 한 규 정
일 부 개 정 령 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4.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자연재난으로 발생한 피해액 산정을 위해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복구단가에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상향하였으나, 국고지원기준은 상향되지 않아, 단일시설물(교량, 터널 등)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국고지원기준을 충족하게 되는 불합리함을 개선하는 한편, 재난복구 비용 등에 대한 부담기준에 신규 지원항목에 대한 부담률 및 세부 지원기준을 마련하고 그 외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국고지원기준 및 국고 추가 지원 기준 상향(안 제5조제1항, 별표 2)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안정 지원 등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부담분을 국비로 지원하기 위한 국고지원 기준과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 피해액을 재정력지수에 따른 등급별로 30%씩 상향하고자 함

나. 관련부처의 법령개선 권고사항 반영(안 제15조 및 별지 제1호서식)

1)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법령개선 권고사항으로 고유식별정보가 처리되는 업무를 구체적으로 나열하여 업무처리목적을 명확히 하고자 함

2) 법제처의 개정 권고사항으로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반환절차를 수정

다. 고등학생 학자금 지원기준 변경(안 별표 1)

무상교육 전면실시('21년)로 행정안전부 고시 단가를 준용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기준을 변경하고자 함

라. 재난복구 비용 등에 대한 부담기준에 신규 지원항목 반영(안 별표 1)

농기계, 시설하우스 설비, 축사 설비 등 농·축산 분야 신규 지원항목에 대한 부담률 및 세부 지원기준을 마련

마. 기타 개정사항

1) 임시주거용 조립 주택에 대한 부담률이 명확하도록 세부 기준 신설(안 별표 1)

2)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가감률에 대하여 관련 규정 개정에 따라 평가의 명칭과 항목 등을 정비(안 별표 2)

3) 재난등급별 재난지원금 기준표의 비고란에 재난지수 산정대상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인명피해 재난지수는 합산에서 제외됨을 명시(안 별표 3)

4) 자연재난 피해신고서의 유의사항과 처리절차에 주생계수단 확인을 통해 재난지원금이 지원되는 행정절차 명시(안 별지 제1호서식)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기획재정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관계기관 의견조회 및 입법예고 예정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예정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중 “20억원”을 “26억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26억원”을 “33억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32억원”을 “41억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38억원”을 “49억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44억원”을 “57억원”으로 한다.

제15조 중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및 이 영에 따른 재난복구 및 재난지원금 지원 등에 관한”을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제12조제2항 각 호의 간접 지원 실시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9조에 따른 재난지원금의 지원 등의 실시에 관한 사무

2. 제12조에 따른 간접 지원 등의 실시에 관한 사무

별표 1 제1호2)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고등학생 학자금(수업료) 면제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지원 100퍼센트	고등학생에게 지원하는 학자금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	------------------	-----------	--

별표 1 제2호다목1)의 그 밖의 세부 기준란 중 “재배시설과”를 “재배시설·설비 및 농기계와”로, 같은 란 중 “시설을”을 “시설·설비를”로 하며, 같은 호 1)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축사 파손·유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가) 지원 35퍼센트 나) 용자 55퍼센트 다) 자기 부담 10퍼센트	축사와 설비 및 분뇨처리 시설에 한정하여 지원한다.
-------------	--------------------	--	------------------------------

별표 1 제2호아)를 다음과 같이 한다.

아)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설치에 드는 금액	(1) 국고 50퍼센트 (2) 지방비 50퍼센트	세대원이 3명이거나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운영지침」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추가 시설이 필요하다고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비 100퍼센트를 지원할 수 있다.
------------------	-----------	-------------------------------	--

별표 2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군이 있는 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시·군·구의 최근 3년 평균 재정력지수	0.1 미만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의 지방비 총부담액 - 65억원) × 국고 추가지원율
		(읍·면·동의 지방비 총부담액 - 6.5억원) × 국고 추가지원율
	0.1 이상 0.2 미만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의 지방비 총부담액 - 82.5억원) × 국고 추가지원율
		(읍·면·동의 지방비 총부담액 - 8.25억원) × 국고 추가지원율
	0.2 이상 0.4 미만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의 지방비 총부담액 - 102.5억원) × 국고 추가지원율
		(읍·면·동의 지방비 총부담액 - 10.25억원) × 국고 추가지원율
	0.4 이상 0.6 미만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의 지방비 총부담액 - 122.5억원) × 국고 추가지원율
		(읍·면·동의 지방비 총부담액 - 12.25억원) × 국고 추가지원율
	0.6 이상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의 지방비 총부담액 - 142.5억원) × 국고 추가지원율
		(읍·면·동의 지방비 총부담액 - 14.25억원) × 국고 추가지원율

별표 2 제2호제3항 중 “결과,”를 “결과, 법 제34조에 따른 재난관리자원의 비축·관리 등의 평가 결과, 법 제58조에 따른 재난 피해상황 조사 결과,”로,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중앙대책본부장의 지휘에 대한 시·군·구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의 이행 정도”를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6조에 따른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율 점검 결과”로 한다.

별표 3 비고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4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사망·실종, 부상자 구호에 따른 재난지원
금은 재난지수 합산에서 제외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자연재난 피해신고서

※ 제3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개인정보 제3자 제공·활용 동의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쪽 중 제1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	-----	------

1. 피해자 정보

주소(사업장)							
주거 형태		소유자(실거주) [], 소유자(미거주) [], 세입자 [], 공공임대 세입자 []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					
가족 수		명(주민등록상 세대주 및 세대원)					
고등학생 수		()고등학교 명 ()고등학교 명					
재난지원금 지급통장 계좌번호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연락처	이동전화	-	-	통신사명	[]KT []LGU+ []SKT []기타	가입자 정보	성명: 생년월일:
	유선전화	()	-			가입자 정보	성명: 생년월일:

2. 피해 내용

※ 피해시설명부터 피해 원인까지 번호별로 연계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피해 발생 위치						
피해시설명		①	②	③	④	⑤
총면적(소유 + 임차)		①	②	③	④	⑤
면허·허가·등록 번호		①	②	③	④	⑤
피해물량	신고	①	②	③	④	⑤
	확정	①	②	③	④	⑤
피해 구분		①	②	③	④	⑤
피해 원인		①	②	③	④	⑤
간접지원	용자신청 여부	[]	[]	[]	[]	[]
	국공유재산 및 국유림 사용 또는 대부 여부	[]	[]	[]	[]	[]
피해 발생 위치						
피해시설명		⑥	⑦	⑧	⑨	⑩
총면적(소유 + 임차)		⑥	⑦	⑧	⑨	⑩
면허·허가·등록 번호		⑥	⑦	⑧	⑨	⑩
피해물량	신고	⑥	⑦	⑧	⑨	⑩
	확정	⑥	⑦	⑧	⑨	⑩
피해 구분		⑥	⑦	⑧	⑨	⑩
피해 원인		⑥	⑦	⑧	⑨	⑩
간접지원	용자신청 여부	[]	[]	[]	[]	[]
	국공유재산 및 국유림 사용 또는 대부 여부	[]	[]	[]	[]	[]

3. 간접 지원

※ 간접지원 항목별 지원 여부는 간접지원 실시기관별 확인을 거쳐 결정됩니다.

도시가스 사용 여부	예[], 아니오 []	가입자명:	생년월일:
자동차 소유 여부	예[], 아니오 []	자동차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공공주택 임대 신청 희망 여부	예[], 아니오 []	※ 「재해구호법」에 따른 이재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긴급한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위기가족 긴급지원 희망 여부	예[], 아니오 []	※ 가족돌봄, 가족의 심리·정서 지원 등	
건강보험료 체납 여부	예[], 아니오 []		
과태료 징수 유예 희망 여부	예[], 아니오 []	※ 현재 부과된 과태료가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재해손실 공제 신청 희망 여부	예[], 아니오 []	※ 자연재난으로 상속재산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로 한정합니다.	

4. 확인 사항

동일세대 신고 여부	예[], 아니오 []	내용:	
다른 시·군·구에 동일한 피해신고를 했는지 여부	예[], 아니오 []	내용:	
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가입 여부	예[], 아니오 []	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가입 의사 유무 ※ 좌측항목 '아니오' 선택 시	예[], 아니오 []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2항, 제3항 및 제6항에 따라 재난지원금을 받기 위해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피해자와의 관계: 본인[]가족[]이장·통장[]이웃[]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1. 주민등록표 등본 2. 소득금액 증명 3. 가족관계증명서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피해자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1. 재난지원금은 위의 신고 내용을 기초로 담당 공무원이 주생계수단 등을 확인하여 지급합니다.
2. 위의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3제2항에 따라 재난지원금을 즉시 반환해야 하며, 반환해야 할 반환금을 지정된 기한까지 반환하지 않으면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국세 강제징수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합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본인의 신고에 따라 취득한 개인정보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군이 있는 특별자치도의 도지사는 제외합니다. 이하 이 서식에서 같습니다)·시장·군수·구청장이 주생계수단 및 각종 지원혜택의 확인을 위한 자료로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피해자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 제3자 제공·활용 동의

- 본인의 신고에 따라 취득한 개인정보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주생계수단 확인 및 용자 등의 간접 지원을 위한 자료로 공공기관 및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제2항 각 호의 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으면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제2항 각 호의 기관에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피해자

(서명 또는 인)

- 본인의 신고에 따라 취득한 개인정보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재해구호법」 제26조에 따른 의연금품의 배분 및 사용 등을 위한 자료로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배분위원회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으면 위 배분위원회에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피해자

(서명 또는 인)

- 본인의 신고에 따라 취득한 개인정보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전자정부법」 제9조의2에 따라 자연재난 피해신고서 접수 여부 등을 알리기 위한 자료로 행정안전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으면 피해신고서 접수 여부 등의 알림이 발송되지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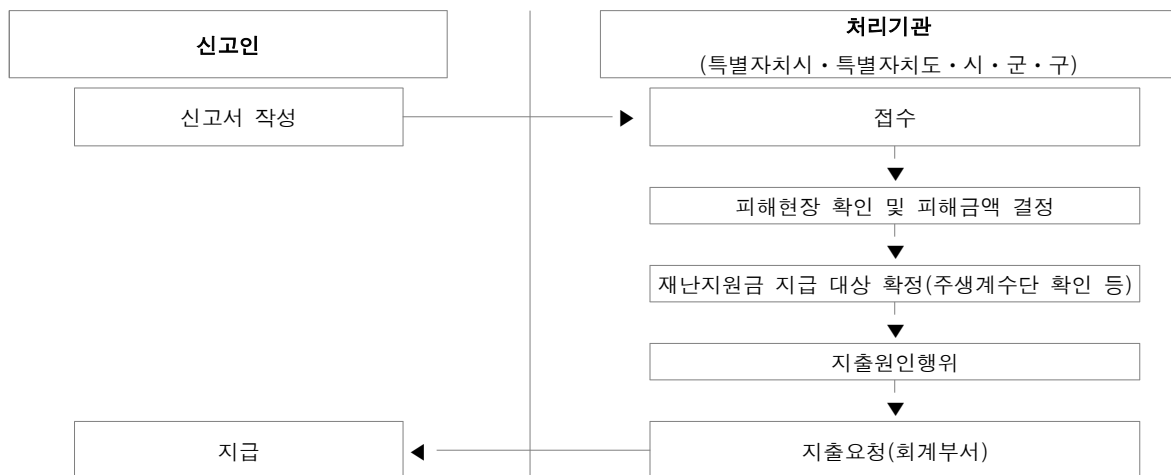
피해자

(서명 또는 인)

작성 및 제출 방법

1. []에는 해당 사항에 √ 표를 하시기 바랍니다.
2. 이 신고서는 재난복구 비용 등의 지원을 위해 활용되므로, '1. 피해자 정보'를 정확히 적습니다.
3. 피해 구분란에는 담당 공무원이 현지 확인 후 매물·침수·소파·반파·전파·유실 중 해당하는 것을 적습니다.
4. 음영처리된 부분은 담당 공무원이 현지 확인 후 적습니다.
5. 풍수해·지진재해보험에 가입할 의사가 있다고 √ 표를 한 경우에는 추후 「풍수해·지진재해보험법」 제23조에 따라 별도의 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가입 절차가 진행됩니다.
6. 신고인은 이 신고서를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청,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조(국고의 지원 대상) ① 제4조 제1항제1호·제2호 및 같은 항 제3호나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고의 지원은 동일한 재난 기간에 발생한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군이 있는 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시·군·구(구는 자치구를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군·구”라 한다)의 피해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경우에만 한다.	제5조(국고의 지원 대상) ① ----- ----- ----- ----- ----- ----- ----- ----- ----- ----- -----.
1. 최근 3년간의 평균 재정력지수가 0.1 미만인 시·군·구: <u>20억 원</u>	1. ----- ----- <u>26억 원</u>
2. 최근 3년간의 평균 재정력지수가 0.1 이상 0.2 미만인 시·군·구: <u>26억원</u>	2. ----- ----- <u>33억원</u>
3. 최근 3년간의 평균 재정력지수가 0.2 이상 0.4 미만인 시·군·구: <u>32억원</u>	3. ----- ----- <u>41억원</u>

4. 최근 3년간의 평균 재정력지수가 0.4 이상 0.6 미만인 시·군·구: 38억원

5. 최근 3년간의 평균 재정력지수가 0.6 이상인 시·군·구: 44억원

② ~ ④ (생략)

제15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행정안전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및 이 영에 따른 재난복구 및 재난지원금 지원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신설>

4. -----

- 49억원

5. -----
----- 57억원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5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제12조제2항 각 호의 간접 지원 실시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따른 -----

-----.

1. 제9조에 따른 재난지원금의 지원 등의 실시에 관한 사무

2. 제12조에 따른 간접 지원 등의 실시에 관한 사무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복구지원과	
연 락 처	(044) 205 - 5315